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규정 신설 등〉
■ 모경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승강기 설치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발주자 및 설치공사업자의 의무 신설 등	2
2.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규정 신설 등	7
3.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근거 신설 등	21
4.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및 설치신고 규정 마련 등	27
5.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고·고장 통보 의무 신설 등	3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30.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승강기 설치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발주자 및 설치공사 업자의 의무 신설 등

개정안은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설치공사업자에게 각각 승강기의 기계실 등 제공 의무, 안전하게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27조), 승강기의 기계실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81조제1항 제4호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절 <u>승강기의 설치 등</u> <u><신 설></u>	제1절 <u>승강기의 설치 및</u>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u> 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① <u>승강기</u> <u>설치공사를 도급하는 자(제조·수</u> <u>입업자가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u> <u>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발</u> <u>주자”라 한다)는 설치공사업자가</u> <u>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u> <u>“설치공사”라 한다)를 안전하게</u> <u>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u> <u>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u> <u>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 설></u> 5. ~ 7. (생략)	<u>장을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u> <u>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u> <u>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제82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기의 설치신고¹⁾, 승강기의 설치검사²⁾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승강기 사고 현황을 피해자 구분별로 살펴보면,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승강기 기술자의 사고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1건의 승강기 기술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2016-2025년 피해자 구분별 승강기 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이용자	건물 관리자	승강기 기술자
2025년	59	47	1	11
2024년	48	38	0	10
2023년	43	37	1	5
2022년	56	50	1	5
2021년	80	62	4	14
2020년	91	72	5	14
2019년	77	65	3	9
2018년	24	24	0	0
2017년	29	29	0	0
2016년	45	43	0	2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설치공사에 있어 별도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음에 따라 발주자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도급하고 설치공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기를 단축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020년 4월 정부(관계부처합동)에서 발표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르면, 건설사에서 승강기 시공사(설치공사업자)에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야간·주말 작업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가 기계실·승강로·승강장 등 설치공사에 필요한 공간을 설치공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설치공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여 불공정 계약에 따른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조 문	개정 내용
승강기 설치공사 책임 및 적정 공사비 근거 마련	제27조 (승강기의 설치 등)	▶ 발주자의 기계실·승강로·승강장 등 제공 의무 및 설치공사업자의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시공 의무를 규정
	제27조의2 (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 시공품질 확보 및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치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연구 업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
	제82조 (과태료)	▶ 기계실·승강로·승강장 등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안 제27조의 2)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은 없어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적정 공사비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유사 입법례]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u>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u>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업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승강기 설치공사 안전 환경 개선 및 설치공사의 품질 제고 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2.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발주자가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임시사용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를 규정하고(안 제27조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 행위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80조제1항제16호의2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27조의4),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 행위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제4호의3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등) ① 발주자는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 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승강기(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라 한다)에

현행	개정안
	<u>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u> <u>1. 중간검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u> <u>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u> <u>가. 제1호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u> <u>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u> <u>다.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건설공사용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u>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u>

현행	개정안
<신 설>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공사용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①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행	개정안
	<u>라 한다)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u> <u>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u> <u>2.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u> <u>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설치공사업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 <u>④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제3항에 따라</u>

현행	개정안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u><신설></u> 17. ~ 2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u>)는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⑤ 발주자는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u> 제80조(벌칙) ① ----- ----- -----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u>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자</u> 17. ~ 28.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4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u>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u> <u>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u> <u>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u> <u>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u> <u>거나 사용한 자</u>
<u><신 설></u>	<u>4의3.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u>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u> <u>한 보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u> <u>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u> <u>로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u> <u>하게 한 자</u>
5. ~ 11.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 -----.
<u><신 설></u>	<u>4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u> <u>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u> <u>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u> <u>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u> <u>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u> <u>자</u>
5.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1. ~ 10. (생략) <u><신설></u>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11.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u><신설></u>	11의2.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 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자
12. ~ 20.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u><신설></u>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 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 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1. ~ 8. (생략)	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와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u><신설></u>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 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 되게 관리한 자
<u><신설></u>	2. 제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건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u>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u>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건설 현장에서 인력과 자재의 운반을 위해 건설용 리프트³⁾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실제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기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건설용 리프트를 대신해 해당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우 설치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후 건축물의 준공 시점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승강기(소방구조용, 피난용, 장애인용 등)로 종류를 변경하는 수시검사⁴⁾를 통해 본래 용도에 제공하고 있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 18,077대 중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된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11,723대(약 64.9%), 2024년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 20,948대 중 12,038대(약 57.5%)가 위와 같이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종류를 변경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

그런데, 공동주택 등 건설 현장에서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관련 규율이 부재함에 따라, 건물 준공 직후 승강기를 본래 용도로 이용하는 초기에 사고·고장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도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이 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임시사용 검사를 통한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도입,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중간검사, 정밀검사) 실시 등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조 문	개정 내용
건설공사용 승강기 임시사용검사 및 단계별 안전검사 도입	제27조의3 제1항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설치검사 전에 임시사용검사를 의무화
	제27조의3 제2항	▶ 임시사용검사 후 안전검사(중간검사·정밀검사) 도입 · 중간검사: 임시사용검사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 · 정밀검사: (가) 중간검사 불합격 (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발생 (다) 성능저하 우려 등 장관이 필요 인정 시
	제27조의3 제3항	▶ 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승강기의 공사용 사용 금지

구 분	조 문	개정 내용
	제27조의3 제4항~제6항	▶ 사용증명서/사용금지 표지 발급·부착·관리 의무 및 검사 기준·항목·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근거 규정
	제80조 제1항~제2항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한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의무 부과	제27조의4 제1항	▶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
	제27조의4 제2항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시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
	제27조의4 제3항~제5항	▶ 필요 시 설치공사업자에게 업무 대행 가능(안전관리자는 지도·감독), 업무 결과 보고 의무, 결함 인지 시 즉시 보수 및 보수 완료 시까지 사용 중지 의무
	제80조 제2항	▶ 건설공사용 승강기 결함 보고를 받고도 보수 없이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2조 제1항	▶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2조 제2항	▶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공사용 승강기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2조 제3항	▶ 임시사용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여 받은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2조 제4항	▶ 임시사용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여 받은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 및 개정안의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용체계 비교]

현행	❶ 설치공사 및 설치검사 설치공사 후 설치신고·검사 수행 →	❷ 공사용 운행 공사용 운행 공사 인력·자재 이동 →	❸ 사용종료·일반전환 수시검사로 종류 변경 관리주체 인계
개정안	❶ 설치공사 설치공사 착수 발주자: 설치환경 제공 설치공사사업자: 안전시공 →	❷ 임시사용검사 공사용 사용 전 검사 설치검사 이전 실시 합격: 사용 가능 →	❸ 공사용 운행 공사용 운행 공사 인력·자재 이동 일반이용에 사용 금지
	❹ 중간·정밀검사 사용 중 안전검사 중간검사: 주기적 확인 정밀검사: 사고·고장 시 →	❺ 안전관리·운행정지 상시 안전관리 결함 발견 시 즉시 보수 중대 결함 시 운행정지 →	❻ 사용종료·일반전환 품질확보 후 전환 사용 종료 후 품질 정비 설치검사 합격 후 전환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이 법에서 규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설치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면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⁵⁾.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설치한 일반 승강기에 대해 임시사용 검사를 받도록 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현행법에서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하고 있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승강기의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이 법에서 정하는 유지관리⁶⁾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 새롭게 정하려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을 둠에 따라 이 법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제반 규정과는 다른 일종의 특칙으로서 별도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 체계에 따른 일반적인 승강기와 동일하게 설치검사 이후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발주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설치공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27조의4제3항)과 관련하여, 발주자,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 간 업무 수행 체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해당되는데, 현행법의 체계와 비교할 때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는 현행법 상 승강기의 유지관리 활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를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치공사업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설치공사업자와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유지관리업자)를 구분하여 규정⁷⁾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안 제82조제1항제4호의3)은, 개정안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2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3. <u>건설공사용</u>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4의3. <u>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u>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일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 제도적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승강기의 안전·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하위 법령 및 고시(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및 건설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3.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안 제27조의5),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안 제80조제1항제16호의3)과 운행(사용)정지표지 부착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안 제82조제3항제2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현행	개정안
	<u>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u> 2.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u> 3. <u>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u> 4. <u>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5. <u>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u> 6. <u>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③ <u>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u> ④ <u>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u><신설></u> 17. ~ 28. (생략)	제80조(벌칙) ① ----- ----- ----- -----. 1. ~ 16. (현행과 같음) <u>16의3.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u> 17. ~ 28.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 8. (생략)	제82조(과태료) ③ ----- ----- -----. <u>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u> <u>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u>

현행법은 승강기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시·군·구청장이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승강기의 운행을 방지하고 있음.

[현행법 상 통보 및 운행정지명령 제도]

행정안전부장관 → 시·군·구청장 통보 사항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 중에 보수가 끝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 임시사용 검사 및 안전검사, 자체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명령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통보 및 운행정지명령 제도]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통보 사항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시·도지사의 운행정지명령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4.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수 중에 보수가 끝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상 운행정지명령의 발령 주체는 시·군·구청장인 반면, 개정안에서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정하려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관련 전반적인 규정 중 시·도지사의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현행법에서와 같이 시·군·구청장을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의 발령 주체로 규정하여 모든 승강기의 운행정지 현황에 대한 통일적인 파악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상 통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과태료 규정(안 제82조제3항제2호)은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인 개정안 제27조의5제3항을 보면 ‘운행정지 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조문 제목에서도 ‘운행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태료 규정의 ‘사용정지 표시’를 ‘운행정지 표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2조(과태료) ③ ----- ----- -----.	제82조(과태료) ③ ----- ----- -----.
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u>사</u> <u>용정지</u>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 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u>운</u> <u>행정지</u>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 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와 같음)	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와 같음)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용 승강기는 설치검사 이전 단계에서 운행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정지명령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및 설치신고 규정 마련 등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로의 사용이 끝난 승강기에 대해서 발주자의 정비 조치 및 설치공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안 제27조의6 및 제27조의7), 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4호의4 및 제2항제11호의3).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7(승강기의 설치신고) ----- ----- 때(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6에 따른 조치를 끝냈을 때를 말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 -----.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4의4. 제27조의6을 위반하여 정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27조의7을 -----
12. ~ 20.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관리체계 하에서는 승강기가 건설공사용으로 사용되다가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승강기에 대한 이른바 ‘리뉴얼 공사’를 거친 후 수시검사를 통해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⁸⁾에게 인계하고 있음.

그런데 ‘리뉴얼 공사’와 관련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수시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등 승강기 운행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경우, 아직 현행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이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받기

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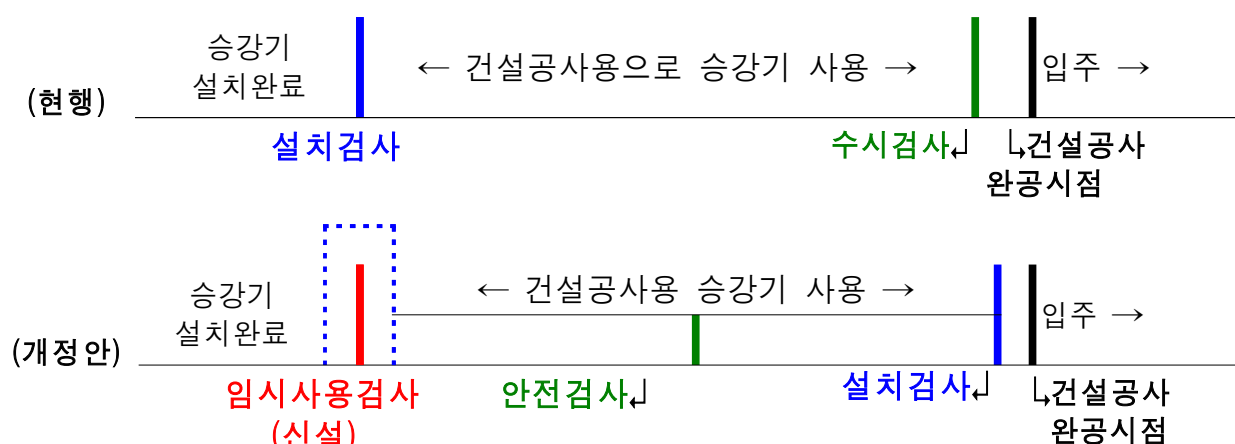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위한 전제로서 설치신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이 끝난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 정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현행법 상 설치신고 규정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설치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본래 용도에 적합하게 제공되고 이후 현행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와 개정안에 따른 관리체계]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만, 개정안은 발주자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정비 조치 의무자가 발주자인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정비 조치 의무 수행과 관련한 발주자와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그 사용을 마치고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단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입장임.

5.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고·고장 통보 의무 신설 등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시 발주자로 하여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안 제48조),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및 안전검사이력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고 제공·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73조),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관련 규정의 도입에 따라 자료 제출 및 보고, 수수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8조).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u>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u>제2절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u> <u><삭 제></u>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 ----- ----- 같다) <u>또는 발주자(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한다)---</u> ----- -----.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 사용검사 이력정보</u>
<u><신설></u>	<u>5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 검사 이력정보</u>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② ----- ----- -----

현행	개정안
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③ (생략) 제7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7. ~ 12. (생략) ② (생략)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발주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u>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수수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u> <u>6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u>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u> 5의2. <u>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 검사</u> 5의3. <u>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 용증명서 및 사용금지 표지의 발 급</u> 5의4. <u>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건 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u> 5의5. <u>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통 보</u> 5의6. <u>제27조의7</u> -----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이 법에 규정하면서 현행법 체계에 따른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한 통보 의무, 해당 승강기의 검사 이력정보의 관리, 검사 수수료, 관련 업무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위탁 등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한 통보 의무자 및 안전관리 업무·사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의 자료 제출과 보고 요청의 대상을

발주자로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사 수수료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이 현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승강기에 대비하여 특별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대비 건설공사용 승강기 관련 개정안의 규정]

구 분	현행법의 승강기	개정안의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통보자 (제48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발주자(설치공사업자)
정보망 관리 대상 정보 (제73조)	설치검사 이력정보	임시사용검사 이력정보
	안전검사 이력정보	안전검사 이력정보
자료제출·보고 요청 대상 (제75조)	제조·수입업자,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발주자를 추가
수수료 (제76조)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임시사용 검사를 받으려는 자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공단에 대한 업무 위탁 (제78조)	설치검사 대행*	임시사용 검사
	안전검사 대행*	안전검사
	검사합격증명서·운행표지 발급	사용증명서·사용금지 표지 발급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접수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접수
	설치신고 접수	설치신고 접수

*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57조(공단의 사업)⁹⁾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설치공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건설공사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용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통보자(안 제48조제1항)의 범위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사고·고장 통보 의무, 검사 이력정보 관리, 공단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 등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